

# < 2026년 FTA특례법령 개정사항 I - 교재순 >

구민회 관세사

- ★ 2026년 1월20일 전까지 개정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총정리)
  - 교재순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하세요)
  
-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시험전까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 개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으로 표시함.
  
- ★ 「대한민국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법률의 제정되었으나, 협정발효가 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아직은 시험범위가 아님. 시험전에 시행발표가 나면 시험범위에 해당하니 그때 바로 공지하겠음.

● **FTA법령 전체 ★★ - 타법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1. 기획재정부령 --> 2. 기획재정부장관 --> 3. 기획재정부 --> 4. 산업통상자원부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재정경제부령 2. 재정부경제장관 3. 재경경제부 4. 산업통상부 5. 산업통상부장관

● **교재53페이지 ★★ - 필리핀 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추가(신설)**

개정 전	개정 후
10) 이스라엘과의 협정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0) 이스라엘과의 협정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1) 필리핀과의 협정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 **교재138페이지 ★★-특별긴급관세 한도수량내 적용금지협정추가(신설)**

개정 전	개정 후
(7) 기준발동수량 및 세율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행령 제3조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③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7) 기준발동수량 및 세율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행령 제3조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③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④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 교재177페이지 ★★★ - 특송물품 소액물품 면세 확대(삭제)

- 면세대상이 미합중국, 콜롬비아, 뉴질랜드에서 전체 협정수입국으로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p>(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중국·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①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③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①의 물품으로 한정한다.</p> <p>①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과세가격\$250)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p> <p>②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p> <p>③ 령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p>	<p>(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중국·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①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③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①의 물품으로 한정한다.</p> <p>①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과세가격\$250)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p> <p>②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p> <p>③ 령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p>